기술협력에 관한 비밀유지계약서 (NDA)

본 비밀유지계약서(이하 "본 계약")는 ㈜비에스지 파트너스(이하 "갑")와 ㈜알파솔루션(이하 "을")이 상호간의 기술협력(이하 "본 프로젝트")을 진행함에 있어, 공개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5 년 7월 15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다음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"본 프로젝트"의 평가, 기획, 개발 및 수행을 위해 양 당사자가 상호 공개하는 비밀정보의 보호 및 취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비밀정보의 정의)

- ① "비밀정보"라 함은 "본 프로젝트"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, 구두, 전자적 방법 등형태를 불문하고 제공하는 모든 기술상, 영업상, 재무상 정보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 - 1. 소스코드, 알고리즘, API, 회로도, 설계, 기술 사양, 노하우 등 일체의 기술 정보
 - 2. 사업계획, 고객 명단, 재무 자료, 마케팅 전략 등 일체의 경영 및 영업 정보
 - 3. 본 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, 그리고 "본 프로젝트"와 관련된 협의 내용 자체
- ② (비밀의 식별)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비밀정보에 "비밀(Confidential)" 또는 그에 준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러한 표시의 누락이 정보의 성격이나 정황에 비추어 명백히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정보의 비밀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.

제 3 조 (비밀유지 의무)

- ①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(이하 "정보수령자")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(이하 "정보제공자")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 3 자에게 공개, 누설하거나 "본 프로젝트"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임직원을 "본 프로젝트"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, 해당 임직원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의무의 예외)

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 3 조의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.

- 1. 정보수령자가 수령하기 이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
- 2. 정보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
- 3.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 3 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
- 4.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와 무관하게 정보수령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
- 5.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적법한 명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되는 정보 (이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)

제 5 조 (권리의 귀속)

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공개가 정보제공자의 특허권, 저작권,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양도나 사용 허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 모든 권리는 원 권리자인 정보제공자에게 귀속된다.

제 6 조 (자료의 반환 및 파기)

① 정보수령자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포함된 모든 유·

무형의 자료(사본 및 복제물 포함)를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파기하고, 파기 시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.

② 본조 제 1 항에 따른 자료의 반환 및 파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정보수령자가 부담한다.

제 **7** 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 년간 유효하다. 단, 제 3 조, 제 5 조, 제 6 조의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5 년간 추가로 존속한다

제 8 조 (손해배상)

각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
제 9 조 (일반조항)

- ① (양도금지)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.
- ② 을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직접손해에 한해 1,000 만원으로 제한하며, 갑은 을에게 침해금지·가처분 등비금전적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.

제 10 조 (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)

- ① 준거법 및 관할)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,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제 1 심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- ② (완전합의)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며,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상의 합의나 진술에 우선한다.
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다.

2025년 7월 12일

갑 : 주식회사 BSG 파트너스

대표이사: 홍 길 동 (인)

을 : 주식회사 <mark>알파솔루션</mark>

대표: 김 철 수 (인)